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4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장에게 위임하여 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및 착수·완료 신고 접수 권한을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399호, 2026.2.27.공포, 2026.8.28.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및 기관·법인·단체 위탁사항 등 법률

위임사항 마련

-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(궁능유적본부장)에게 위임(안 제37조제1항 신설)
-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규정(안 제37조제2항 신설)
 -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(안 제37조 신설)

나. 현행 미비점 개선

-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절차 오타 수정(안 제3조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7조를 제38조로 하고,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6조제1항제7호(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의 접수
2. 법 제18조(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또는 변경허가
3. 법 제19조(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취소
4.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위임 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)

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청

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51조 및 이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

2. 법 51조 및 이 영 제35조제1항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전시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별표 2 중 (“제37조” 관련)을 (“제38조” 관련)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) ① ~ ⑤ (생략)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<u>제3항</u> 에 따른 예고 및 <u>제4항</u> 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. ⑦ (생략) <u>제37조</u>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제4항</u> ----- <u>제5항</u> ----- -----. ⑦ (현행과 같음) <u>제38조</u> (현행 제37조와 같음) <u>제37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</u>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1. 법 제16조제1항제7호(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의 접수 2. 법 제18조(법 제11조에 따라

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
따른 현상변경 허가 또는 변
경허가

3. 법 제19조(법 제11조에 따라
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
따른 현상변경 허가 취소

4.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
부과·징수(위임 받은 권한을
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만 해당)

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에
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
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
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탁할
수 있다.

1. 법 51조 및 이 영 제35조제1
항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
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

2. 법 51조 및 이 영 제35조제1
항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
을 활용한 교육 및 전시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
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
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
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908